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율방재단 설치근거 마련 등〉

- 김종양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003호)
- 조은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67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서기영

목 차

I. 제안경위 1

【김종양의원안】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조은희의원안】

1. 제안경위 3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 검토의견 5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 5

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중앙회) 설립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12

3.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 소집, 금지행위, 교육·훈련, 평가 등(조은희의원안) 18

I. 개요

【김종양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0.
3. 회부연월일 : 2024. 8. 2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재난의 양상이 다양화·복합화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활동, 사회재난 관련 이재민 지원 및 안전캠페인 등 사회재난 활동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하지만, 지역자율방재단의 근거가 「자연재해대책법」에 규정되어 있어, 사회재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며, 이에 사회재난에 대한 지역자율방재 역량 강화와 자율방재단원의 활동 시 지원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율방재단의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마련하고자 함

또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방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활동에 필요한 재난장비 등 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봉사단체·재난관련업체·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5)
- 나. 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6)
- 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재난 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의7)

【조은회의원안】

1.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조은회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0.
3. 회부연월일 : 2024. 9. 1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에 그 설치근거가 있어, 그 활동이 자연재난에 국한됨에 따라 감염병 등 사회재난과 관련된 위기 상황에는 활동이 제약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자율방재단의 활동범위 확대를 위해 자율방재단의 설치근거를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5조의2).
- 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음(안 제75조의4).
- 다.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75조의5).
- 라.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75조의6).
- 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5조의7).
- 바.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구 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고,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75조의9).

II. 검토의견

1.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근거 마련(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개정안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마련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마련하려는 것임(김종양의원안 제75조의5, 조은희의원안 제75조의2).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신설>	제75조의5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지역자율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5조의2(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재난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재난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난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난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부칙 <u><신설></u>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u><신설></u>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전국연합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7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으로 본다.	제2조(지역자율방재단 및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은 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방재단으로 본다.
<u><신설></u>	② 이 법 시행 전에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제7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전국연합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는 제75조의9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제48조, 제66조”를 “제48조”로 한다.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삭제한다. 제75조제1항 전단 중 “제48조, 제66조”를 “제48조”로 한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¹⁾하고 있음.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근거를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둠에 따라, 현행 법령상으로는 그 활동 범위가 자연재난 관련 사항에 제한됨.

그러나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활동 뿐만 아니라 재난안전 예방활동, 지역축제 안전관리, 방역·소독 활동, 이재민 지원 등 다양한 사회재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 실질적인 운영 상황과 법체계가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도별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실적]

(단위: 회,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계	횟수	33,669	49,872	36,111	
	인원	264,437	301,051	308,814	
자연재난활동	횟수	23,788	43,758	31,147	
	인원	200,188	234,889	258,561	
	사회재난활동	횟수	9,881 (29.3%)	6,114 (12.3%)	4,964 (13.7%)
		인원	64,249 (24.3%)	66,162 (22.0%)	50,253 (16.3%)
	재난안전 예방활동 (안전캠페인 등)	횟수	953	1,261	1,429
		인원	8,861	16,566	15,674
	지역축제 안전관리 (교통, 인파관리등)	횟수	201	194	501
		인원	1,256	2,174	7,058
	방역, 소독 활동 (병해충 방제 등)	횟수	7,208	2,982	732
		인원	42,142	27,935	6,287
	이재민 지원 (사회재난 관련)	횟수	28	86	64
		인원	341	918	598
	기타*	횟수	1,491	1,591	2,238
		인원	11,649	18,569	20,636

자료: 행정안전부

* 기타 사회재난 활동: 폭발사고 현장지원, 화재현장 분향소 및 유가족 쉼터 운영 지원, 취약계층 가스안전 차단기 설치, 소화전 기름유출 정화지원, 환경 정화활동, 안전 점검(통학로, 어린이 공원, 놀이시설, 공사장 주변 등),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에 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상 지역자율방재단의 법적 근거를 삭제하고,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괄하여 규율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새로이 지역자율방재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실과 법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사회재난 분야와 관련한 지역자율방재단의 활동 근거를 명확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됨.

다만, 김종양의원안은 기존과 같이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조은희의원안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고 ‘재난관리’ 기능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이 ‘○○시·군·구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명’과 ‘지역’이 중복 사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인 명칭은 ‘자율방재단’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지역자율방재단의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의 강화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임.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에 관한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	
	김종양 의원안(‘24.8.20.)	조은희의원안(‘24.9.10.)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이 관)	제75조의5(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주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 -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제75조의2(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 주체: 시장·군수·구청장 - 기능: 재난관리

또한, 자율방재단 구성·운영 주체와 관련하여 김종양의원안은 ‘특별 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은희의원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산하에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두 곳이므로, ‘특별자치시장’뿐 아니라 ‘특별자치도지사’도 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주체로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중앙회) 설립 및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 마련(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개정안은 현재 「자연재해대책법」에 마련되어 있는 전국자율방재단 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이관하면서, 김종양의원안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조은희의원안은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원 및 지도·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자율방재단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김종양의원안 제75조의6 및 제75조의7, 조은희의원안 제75조의7 및 제75조의9).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신설>	제75조의6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전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전국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9(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① 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도별로 관할 구역에 있는 시·군·구자율방재단으로 구성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연합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7(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	다)를 설립할 수 있고, 시·도자율방재단 연합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중앙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 봉사활동 등에 국민 참여증진을 위하여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중앙회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7(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

현행	김종양의원안	조은희의원안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먼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및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²⁾하고 있음.

김종양의원안은 현행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이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근거만 법률에 규정하고 있고, 조은희의원안은 명칭을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로 변경하면서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설립

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① 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위하여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전국연합회의 구성) ① 전국연합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별로 해당 시·도의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으로 구성된 연합회(이하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라 한다)의 회장 및 부회장이 된다. 이 경우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부회장인 회원은 시·도별로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근거도 함께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데, 현재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에 대해서는 법률에 명확한 설립 근거 없이 시행규칙에 의해서만 구성·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하여 ‘시·군·구지역자율방재단’ 상호간의 협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조은회의 원안의 취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전국연합회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에 관한 개정 내용 비교]

구 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안	
	김종양 의원안(‘24.8.20.)	조은회의원안(‘24.9.10.)
전국연합회 등 설립 (이관)	제75조의6(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설립 근거 :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 - 필요사항 : 행안부령으로 정함 - 전국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 및 관리·감독 규정	제75조의9(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및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의 구성) - 설립 근거 : 시·도자율방재단연합회, 전국자율방재단중앙회 - 필요사항 : 행안부령(중앙회), 시·도조례(시·도 연합회) -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 및 관리·감독 규정
공유재산 무상사용 (신규)	제75조의7(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75조의7(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또한, 개정안은 각각 전국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등에 대해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자율방재단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증진을 활성화 하는 한편, 체계적인 활동을 통한 방제효과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도 및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생

각됨.

참고로 개정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도 각각 해당 법률에서 운영 등에 대한 지도 및 관리·감독 근거를 두고 있음.

[운영 등 지도 및 관리·감독에 관한 유사 입법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행위의 금지)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22조(전국연합회의 지도 및 관리·감독) 소방청장은 전국연합회의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앙회등의 지도·감독)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은 중앙회, 시·도경찰청장은 연합회, 경찰서장은 연합대의 운영 등에 대하여 각각 지도·감독한다.

제15조(금지의무) ① 자율방범대원은 자율방범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자율방범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밖에 자율방범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다음으로,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재난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재난상황으로부터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재

난장비 등의 공유재산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 의용소방대에 관하여도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의 무상사용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관한 유사 입법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재난현장 출동 등) ③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소방장비 등 필요한 물품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시설·공유시설의 사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시설·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하여 소방활동에 국한된 의용소방대와는 달리 자율방재단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전반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품’ 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무상 사용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3. 자율방재단의 임무, 소집, 금지행위, 교육·훈련, 평가 등(조은 회의원안)

개정안은 자율방재단의 임무, 소집, 금지행위, 교육·훈련, 평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75조의3, 제74조의4, 제75조의5, 제75조의6 및 제75조의8).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5조의3(자율방재단의 임무) ①</u> <u>자율방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가. <u>자율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의 관리</u> 나. <u>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예찰 활동 등 재난의 예방 및 대비 활동</u> 다. <u>재난관리 관련 교육·훈련 지원</u> 라. <u>재난발생 시 대응 및 복구 활동 지원</u> 마. <u>전염병 예방·방역 활동 등 공중보건 관리 지원</u> 바. <u>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u>

현행	개정안
<신 설>	의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방재단의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5조의4(자율방재단의 소집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은 지역의 재난관리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율방재단원을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자율방재단원은 관할 거주지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소집명령 없이도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방재단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자율방재단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

현행	개정안
<신설>	라 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75조의5(행위의 금지) 자율방재단원은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나. 영리를 목적으로 자율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다. 선거운동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라.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자율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75조의6(교육 및 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자율방재단원의 교육·훈련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8(자율방재단의 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 우수한 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자연재해대책법」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에서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훈련,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³⁾하고 있음.

-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소집 등) 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역자율방재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집된 지역자율방재단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62조(교육 및 훈련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지역자율방재단원 교육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자율방재단의 임무 및 금지행위에 대해서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자율방재단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이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자율방재단의 특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지역자율방재단은 최근 재난의 다양화·복합화 등으로 인해 정부의 행정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지역 상황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지역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운영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에 규정된 엄격한 기준 하에 운영하기 보다는 현실적인 운영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개정안과 관련하여 소집, 교육·훈련, 평가 등에 관하여는 현행 법령체계와 유사하게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자율방재단의 임무에 대해서는 지역별 재난관리 사항에 따라 자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도 및 시·군·구에서 조례로 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율방재단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63조(평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역자율방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등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군·구에 대하여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349